

2025

#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

엠북 교통

공부혁명!  
mbook.kr

- ✦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✦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
- ✦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✦ 최근 개정, 시행 예정 내용 포함
- ✦ 2시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

ISBN : 979-11-94286-90-5

발간일 : 2025-03-17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[by4782@gmail.com](mailto:by4782@gmail.com)

정가 : 16,000원



# 교통관련법규

(도로교통사고감정사)

## [목차]

### 제1편 도로교통법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(p28)

제3장 차마, 노면전차의 통행방법(p39)

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(p80)

제5장 고속도로등 특례(p108)

제6장 도로의 사용(p114)

제7장 교통안전교육(p119)

제8장 운전면허(p130)

제9장 국제운전면허증(p178)

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(p182)

제11장 보칙(p205)

제12장 벌칙(p219)

제13장 범칙행위 처리 특례(p238)

## **제2편 관련 법률**

제1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(p242)

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(p250~254)

## **[용어/약어]**

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

청장은 경찰청장

## 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붉은색은 시행예정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·신설 내용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 제1편 도로교통법규

## 제1장 총칙

1~7조

# 1. 목적

- 도로상 교통의 모든 위험과 장애 방지/제거
-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

# 2. 정의

## 1) 도로

- 도로법상 도로
- 유료도로
- 농어촌도로
- 불특정 다수, 차마 통행 공개 장소로서  
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필요 장소

## 2) 자동차전용도로

-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

### 3) 고속도로

-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

### 4) 차도란 연속선, 안전표지나 유사

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모든 차가  
통행하게 설치

- 연속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 
등으로 이어진 선

### 5) 중앙선

- 차마 통행 방향 구분을 위해 도로에 황색  
실선, 점선 등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 
중앙분리대, 울타리 등 시설물

- 가변차로 설치된 때 신호기 지시 진행방향  
가장 왼쪽 황색 점선

## 6) 차로

-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 
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

## 7) 차선

- 차로간 구분을 위해 안전표지로 경계지점  
표시

## 8) 노면전차 전용로

-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, 안전표지나  
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설치한  
도시철도법상 도로나 차로

## 9) 자전거도로

- 안전표지, 위험방지용 울타리, 유사  
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자전거와 개인형

# 이동장치 통행

## 10) 자전거획단도

-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획단하도록 안전표지로 표시

## 1) 보도

- 연석선, 안전표지, 유사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

- 보행자는 **폭 1m** 이하인, 차마에서 제외되는 다음 기구/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자와

### 실외이동로봇 포함

· 유모차

· 보행보조용 의자차(수동/전동 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)

- 노약자용 보행기
- 어린이 놀이기구
- 동력 없는 손수레
-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 
**이륜자동차(이하 이륜차),**  
**원동기장치자전거(이하 원동기자전거),** 자전거
- 도로작업에 사용되는, 사람이 타거나 화물  
운송 않는 것

## 2) 길가장자리구역

- 보도/차도 미구분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 
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  
가장자리

## 3) 횡단보도

-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안전표지로 표시

#### 4) 교차로

- 십자로, T자로, 둘 이상의 도로(보도/차도가 구분된 도로는 차도) 교차 부분

#### 5) 회전교차로

- 차마가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

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는 원형 도로

- 교통섬은 교차로나 차도 분기점 등에

설치하는 섬 모양의 안전 시설

#### 6) 안전지대

- 도로 횡단 보행자, 통행 차마 안전을 위해

안전표지나 유사 인공구조물로 표시

## 7) 신호기

- 문자, 기호, 등화로 진행, 정지, 방향전환, 주의 등 신호 표시를 위해 사람/전기로 조작

## 8) 안전표지

- 주의/규제/지시 표지판, 도로 바닥의 기호, 문자, 선

## 9) 차마

### 가) 차는

- 자동차

- 건설기계

- 원동기자전거

- 자전거

- 사람/가축, 기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

· 단, 철길, 가설된 선 이용, 차마에서 제외되는

기구/장치, 실외이동로봇 제외

나) 우마는 교통, 운수 용 가속

20)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 이용

1) 자동차

-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않고 원동기로 운전

-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봄

가) 자동차

- 승용/승합/화물/특수 자동차

- 이륜차

나) 건설기계

2) 자율주행시스템

- 완전/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

행정안전부령(이하 부령)으로 세분 가능

### 3) 자율주행자동차(이하 자율주행차)

- 자율주행시스템 갖춘 자동차

### 4) 원동기자전거

- 배기량 125시시 이하(전기 동력은

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)의

- 이륜차, 원동기를 단 차(단, 전기자전거, 실외이동로봇 제외)

### 5) 개인형 이동장치

- 원동기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

운행시 전동기가 작동않고 차체 중량 30kg

미만인, 안전확인 신고된 전동킥보드,

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

자전거

- 6) 자전거는 전기자전거 포함
- 7)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자전거
- 8)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
- 9) 실외이동로봇은 **운행안전인증 받은** 지능형  
로봇

### 30) **긴급자동차(이하 긴급차)**

가) 소방차

나) 구급차

다) 혈액 공급차량

라) 범죄수사, 교통단속, 긴급 경찰업무 수행  
경찰차

마) 군 내부 질서 유지, 부대 이동 유도

국군/유엔군 자동차

바) 범죄수사하는 수사기관 자동차

사) 체포/호송/경비용 교도소/구치소, 소년원,  
보호관찰소 자동차

아) 국내외 요인 경호 공무용

자) 신청에 의해 시도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 
자동차

- 전기/가스 등 공익사업 기관이 응급작업
- 민방위 출동
- 도로 응급작업, 자동차 단속
- 전신/전화 응급 수리
- 긴급 우편물 운송
- 전파감시

차) 다음은 긴급차로 봄

- 경찰/국군/주한유엔군 긴급차에 의해 유도
- 위급 환자/부상자 수혈 혈액 운송

## 1) 어린이통학버스(이하 통학버스)

- 다음 어린이(13세 미만) 교육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한정면허 받아 어린이 대상 운행 운송사업용 자동차
-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이동 제외
- 유치원, 유아교육진흥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
- 어린이집
- 학원, 교습소
- 체육시설

- 아동복지시설(단, 아동 **보**호전문기관 제외)
- 청소년수련시설
- 장애인복지시설(단, 장애인 **직**업재활시설 제외)
- 공공도서관
- 시도 평생교육진흥원, 시군구 평생학습관
-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관

## 2) 주차

- 승객 대기, 화물 적재, 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 또는
-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못함

## 3) 정차

- 운전자가 5분내 차를 정지

- 주차 외의 정지 상태

#### 4) 운전

- 도로 등에서 차마, 노면전차를 본래

사용방법에 따라 사용

- 조종,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포함

#### 5) 초보운전자

- 첫 면허 받은 날, 2년 경과 전 면허 취소된

때 다시 면허 받은 날부터 2년 미경과

- 원동기자전거면허만 받은 자가 이외

운전면허 받으면 첫 면허 받은 것으로 봄

#### 6) 서행

- 차,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

속도로 진행

## 7) **앞지르기**(이하 **추월**)

- 앞 차의 옆을 지나 앞으로 감

## 8) 일시정지

- 차, 노면전차 바퀴 일시 완전 정지

## 9) 보행자전용도로

- 보행자만 다니게 안전표지, 유사

인공구조물로 표시

## 40) 보행자우선도로

-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는

차도/보도 미분리 도로

## 1) 학원

- 자동차등 운전 지식/기능 교육 시설

- 단, 다음 시설 제외